

11월4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3084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132-3	1,222	240.02	614.38	19.64	50.28	제2종근린생활시설	3/	자연녹지지역	20.11.26	보류	현장확인 후 심의진행합니다.
2	20206500000P003126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477	9,995	87.9	87.9	0.8794	0.8794	동.식물관련시설	1/0	자연녹지지역	20.11.26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3	20206500000P003139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3039-3	87,283	16,382.37	57,534.66	18.77	48.93	숙박시설	2/	자연녹지지역	20.11.26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4	20206500000P003106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리 산 25-50	455	79.2	79.2	17.4066	17.4066	창고시설	1/	생산관리지역	20.11.26	부결	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간산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	20206500000P003150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94-4	524	186.2	186.2	35.53	35.53	제1종근린생활시설	1/	계획관리지역	20.11.26	조건부동의	화장실은 남·여 분리계획 바랍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